

	계 약 서 기본계약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19. 09. 27
		페이지 : 1 / 13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62에 소재를 둔 우수AMS(주) [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갑"과"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을"간의 부품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서(이하 "개별계약"
 이라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제 3 조 [계약내용]

- 품 명 : 모든 거래품목 <신규 개발품 및 E/O 변경품 포함>
 규 격 : 도면, 재료규격 또는 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조 [서면발급 및 개별계약의 체결]

1. "갑"은 "을"이 부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서면을 발급하며, "갑"과 "을"은 위 서면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부품의 발주년월일
 - 2) 부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 3) 부품의 납품일자 및 납품장소
 - 4) 부품의 검사방법 및 검사시기

제 5 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

1. "갑"은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이하 '부당한 특약' 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 1) "갑"이 제4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 "갑"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을"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 3) "갑"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을"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 4)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을"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갑"에게 부과된
 의무를 "을"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계 약 서

기본계약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19. 09. 27
 페 이 지 : 2 / 13

제 6 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1. "갑"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개발을 위탁한 후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갑"은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납품증명서를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호에서 "수령"이란 "을"이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갑"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갑"이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 7 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이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소유권, 담보제공 등의 물품의 권리 · 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발주]

1. "갑"은 부품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에 월간단위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연간 소요 예산계획 및 필요정보를 예고한다.

2. 월간발주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 문서로서 통보되고 발주수량,납기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제 9 조 [물품의 제조]

"을"은 "갑"에게 제시하는 규격, 협정등의 서류에 준하는 물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단가의 결정 및 조정]

1. 단가의 결정은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 장소까지의 포장비,운임,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 계약기간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된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한다. 이 경우 "을"은 전항에 의한 부품의 원가계산, 단가결정, 단가조정을 위해 상호 합당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계 약 서

기본계약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19. 09. 27

페이지 : 3 / 13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정산한다.

제 11 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을"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을"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을"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재료 가격 : "갑"의 발주처가 해당 제품에 관련해서 고시하는 원재료 가격을 기준원재료 가격 및 현 시세로 하여 원재료 가격 조정에 적용한다

2) "갑"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할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을"의 신청에 따라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갑"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할 경우

4. "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아니한다.

5.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을"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갑"은 "을"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6. "갑" 또는 "을"(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갑"과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갑"과 "을"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갑" 또는 "을"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7. "갑"과 "을"이나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8. "갑"은 "을" 또는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 약 서

기본계약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19. 09. 27

페이지 : 4 / 13

제 12 조 [납품]

1. "을"은 발주부품을 "갑"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의 공장 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의 사정으로 "갑"이 직접 "을"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 운송 할 경우 모든 운송 경비를 "을"이 부담하고 "갑"은 "을"의 납입대금에서 공제한다.
3. 계약기간중 "을"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는 "갑"의 개발완료시 까지 공급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생산중단 발생시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납입용기 및 청정도유지]

1. "을"은 "갑"으로 부터 승인된 지정용기(철PLT 및 BOX)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업무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
2. 납입용기는 "을"의 책임하에 항상 청정도를 유지하여 관리되어져야 한다
3. "을"은 납품시에 표준 식별표를 부착(용기내적입수량,소재LOT NO,입고일 등) 하여 검수,검사시에 기준이 되어야하며 수량착오,이종등으로 인한 불량은 "을"이 책임진다.
4. 사용도중 훼손으로 인한 용기는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며 물량의 증가에 따른 용기부족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추가제작을 하여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14 조 [검수]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검수는 "갑"의 재료규격 및 검사협정에 따른다.

제 15 조 [재검사 및 비용]

"을"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16 조[불량정산]

"갑"은 "을"의 제품으로 인하여 생산에 투입후 발생된 불량 및 "갑"의 고객에 인도 된후 품질문제로 인하여 손실발생시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제 17 조 [재하도급]

1. "을"은 발주한 부품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조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한다.
2. "을"이 1항의 근거에 준하지 않는 임의 제3제로부터 제조위탁하여 입고후 발생 되는 제반문제는 "을"의 귀책이된다.

제 18 조 [하도급 대금의 지불]

1. "을"은 납품한 내역서(당월말일 마감한 내역)를 익월 10일 이전까지 "갑"에게

계 약 서

기본계약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19. 09. 27

페이지 : 5 / 13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회사 규정에 따라 대금지불한다.

[예: 00년 3월분 마감 → 4월 10일 마감내역 제출 → 4월말일 어음결재]

2. "갑"은 부품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부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4. "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을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분실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6.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 위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갑"이 하도급대금을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제7항 및 제8항에서 각 적용하는 할인을 및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을 고시」 및 원사업자가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

계 약 서

기본계약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19. 09. 27
 페 이 지 : 6 / 13

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에 따른다.

제 19 조 (금형관리 및 소유권)

1. "을"의 책임하에 제작된 금형이라도 "갑"으로부터 일시불로 금형비가 지급되었다면 금형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감가상각비로 제품가에 산입하여 처리된 금형에 대하여도 중도 계약 해지시 생산된 수량에 따른 수명비율에 의거하여 소유권을 결정한다.

2. 금형의 멸실 또는 훼손시에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귀 및 대체품을 제공하여 발주한 부품의 납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3. 거래의 중단,업체의 이관등으로 인하여 금형을 회수 할 경우에는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처리하며 "을"은 고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20 조 (하자보증)

발주부품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된 이후 부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갑"과 별도로 체결한 크레임보상협정에 따라 하자의 보수,대체품의 납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 21 조 (기밀유지)

1. "갑" 과 "을"은 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갑"과"을"은 계약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제 22 조 (계약해제 및 해지)

1.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은경우

②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및 가처분포함),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계 약 서

기본계약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19. 09. 27

페이지 : 7 / 13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3.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 "갑"또는"을"의 특정사유로 인하여 거래를 중단, 해지코저 할 경우에 서면통보 접수일로 부터 3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동 기간에는 정상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불이행시 모든 손실비용을 책임진다.

4.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적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계약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 3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갑","을" 상호 협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년 월 일

"갑" : 경 남 창 원 시 성 산 구 월 립 로 6 2
우 수 A M S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선 우 (인)

"을" :

	계 약 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품질보증협정서	개정일자 : 2010. 01. 20
		페이지 : 8 / 13

우수AMS(주) [이하 "갑"이라함]와 [이하 "을"이라함]는
 2020년 월 일자로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의거 계약물품에 대한 요구품질의 확보와
 상호신뢰성 향상을 위해 품질보증에 관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품질보증의 의무]

1.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생산 전공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 운영하고 "갑"이 요구하는 품질의 수준을 만족시켜 더욱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 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의 보증에 대하여 "을"이 구입하는 자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조 [품질보증을 위한 실시사항]

"을"은 물품의 수주에서부터 "갑"에게 납품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보증을 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관리기법으로 관리의 향상을 도모 도모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양확인 및 변경]

1. "갑"은 요구하는 품질 사양을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검토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양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서로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 4 조 ["을"의 검사]

"을"은 "갑"의 사양서에 의거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기준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서 사본을 매 납품시마다 "갑"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제 5 조 ["갑"의 검사]

1. "갑"은 "을"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갑"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2. "갑"은 "을"의 품질보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를 생략 또는 조정할 수도 있다.

제 6 조 [품질문제에 대한 조치]

"을"은 납품한 물품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그 요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하여야 한다.

계 약 서

품질보증협정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10. 01. 20

페이지 : 9 / 13

제 7 조 (품질보증 자료의 제출)

1. "갑"은 "을"의 품질보증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개발품 또는 E0발생 및 4M 변경시 다음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가) 검사기준서 (사용재료 및 납입물품에 대한 검사기준)
- 나) 검사성적서 (사용재료 및 납입물품에 대한 검사성적)
- 다) 품질관리 공정도
- 라) 제조공정도
- 마) 공정능력 조사서
- 바) 기타 "갑"이 필요로하는 자료

2. "을"은 "갑"의 요구자료를 "갑"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협정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년 월 일

"갑" : 경 남 창 원 시 성 산 구 월 립 로 6 2
우 수 A M S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선 우 (인)

"을" :



계 약 서

크레임보상 협정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10. 01. 20

페이지 : 10 / 13

우수AMS(주) [이하 "갑"이라함]와 [이하 "을"이라함]는
기본계약서에 의거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하여 제품의 적정품질 수준을 확보하고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클레임의 정의]

이 협정에서 클레임이라 함은 "갑"이 제품으로 출고할때까지의 공정내에서
발견된 불량 또는 출고 후 "을"이 납품한 물품의 결함으로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을"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클레임의 인정]

1. 클레임 발생이 "을"의 물품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갑"이 판단하여 "을"에게
통보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을"은 "갑"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전항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쌍방은 협의후 결정 한다.
3. 클레임의 원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원칙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다.

가) 사용자의 부적절한 사용, 보관, 취급등에 의한 경우.

나) 기타 "을"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 조 [클레임의 통지]

"갑"은 클레임의 내용을 문서로 "을"에게 통지한다.

제 4 조 [보상책임 및 보상방법]

1. 클레임 발생이 "을"의 물품에 원인이 있을 경우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2. "을"은 "갑"에게 초래한 손해액 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지불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 [협의]

이 협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갑"과"을"이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유효기간]

이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갑","을"이 거래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 약 서	문서번호 : WSP-Q-0610
		개정번호 :
	크레임보상 협정서	개정일자 : 2010. 01. 20
		페이지 : 11 / 13

이 협정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1통씩 보관한다.

2020 년 월 일

"갑" : 경 남 창 원 시 성 산 구 월 림 로 6 2
우 수 A M S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선 우 (인)

"을" :

우수AMS(주) [이하 "갑"이라함]와 [이하 "을"이라함]는
본 계약서에 의거 상호신뢰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납품지연으로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납품지연의 정의

이 협정에서 납품지연이라 함은 양산품을 "을"이 제시한 납기일에 납품이
되지 않은 경우와 이로 인한 "갑"의 생산 LINE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2 조 보상책임

"을"이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 협정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보상 책임을 진다.

제 3 조 납품지연의 인정

1. 납품지연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2항에 의거 이의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인정한다.
2. "을"은 전항의 손해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갑"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갑"은 이 경우에 한하여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보상방법

"을"은 "갑"에게 끼친 손해액 일체를 "갑"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지불은
"을"이 "갑"에 대하여 외상매출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이와 상계하며 외상매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한다.

제 5 조 협의

이 협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갑","을"이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1.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2. "갑" 또는 "을"이 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에도 동일하다.

제 7 조

1. "갑"은 "을"이 적기 적소에 제품(전착도장 완료제품)을 "갑"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제품(미도장 제품)을 "갑" 또는 "을"의 장소에 확보하여 긴급 물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긴급물량 발생시 "갑"은 "을"이 제품 생산이 가능한 시간 (평일 17:30, 토요일 17:3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임)까지 제품을 "을"의 장소에 입고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입고된 제품을 익일 생산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협정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1통씩 보관한다.

2020 년 월 일

"갑" : 경 남 창 원 시 성 산 구 월 립 로 6 2
우 수 A M S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선 우 (인)

"을" :